

# 긴급입찰 공고 사유서

## □ 개 요

- 용역명: 우크라이나 키이우지역 교통 마스터플랜 수립
  - “2단계 : 교통모형 구축 및 스마트모빌리티 전략수립”
- 용역기간: 계약일로부터 180일
- 예정금액: 금 990백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 □ 목 적

- 국토교통부와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는 우리기업의 해외 인프라 투자개발사업 진출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해 「해외인프라 도시개발사업 발굴 및 추진 업무」를 시행

## □ 긴급입찰 사유

- 본 사업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수의계약 등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기획재정부 고시 제2023-49호, 2024.01.01.)에 따라 조속한 용역 추진 필요
- 과업성과품 제출을 위한 기간이 부족하므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5조에 근거하여 **공고기간 단축** 필요

## □ 근거법령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5조(입찰공고의 시기)
  - ⑤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또는 제43조의3에 따른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40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1.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5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1. 제20조 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의 경우

1의2. 국가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2. 다른 국가사업과 연계되어 일정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예방·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제2호 및 제3호에 준하는 경우